

	<h2 style="margin: 0;">직원 윤리규칙</h2>		규정번호	3-1-33	
			제정일자	2013.07.0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2	

**제1조(목적)** 이 윤리규칙(이하 ‘이 규칙’이라 한다)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 직원에게 올바른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규칙은 본 대학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기본윤리)** ① 직원은 동양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, 성실, 근검, 박애의 학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, 본 대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

**제4조(책임완수)** 직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사명을 이해하고,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의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**제5조(공정한 직무수행)**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6조(부당이득 금지)**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금품,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된다.

**제7조(상호존중)** 직원은 동료 교직원, 학생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.

**제8조(차별금지)** 직원은 동료 교직원, 학생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에 대해 성별, 종교, 나이, 학력, 국적, 장애,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.

**제9조(성희롱 금지)** 직원은 동료 교직원, 학생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0조(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)** 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1조(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)** ① 직원은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징계)** 총장은 본 규칙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